

의정부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나21603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나216033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7. 7 선고 2020가단14634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은

변론종결 2022. 6. 23.

판결선고 2022. 8. 11.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7. 7. 선고 2020가단14634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D 사이에 2019. 11. 25.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를 취소하고, 피고는 D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19. 12. 10. 접수 제323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G 유한회사는 D에 대하여 151,151,855원 상당의 금전채권이 존재하였고 그 후 원고가 이를 양수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는데,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질 뿐이다. 따라서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그 재산분할결과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상속한 금전채무를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포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상속분

망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적극재산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최소 361,520,2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각 가액이 실거래가가 아닌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된 점, 망인 소유의 M 외 3필지 지상 건물 P동의 가액이 누락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적극재산은 이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초로 D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계산하면 최소 120,520,066원(= 361,520,200원 × 3/9, 원단위 미만 절삭)이 된다.

순번	부동산 표시	가액(원)
1	M 대 449㎡	42,475,400
2	Q 대 89㎡	8,419,400
3	O 대 744㎡	70,382,400
4	R 대 34㎡	3,216,400
5	S 대 177㎡	16,744,200
6	T 대 144㎡	13,622,400
7	M 외 1필지 지상 건물	155,000,000
8	M 외 3필지 지상 건물 U동	51,700,000
합계		361,560,200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K조합 등에 대한 금전채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와 같이 금전채무가 면제된 점은 재산분할결과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재산분할결과

가) 망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K조합으로부터 합계 255,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2016. 5. 25.자 대출금 160,000,000원 + 2017. 4. 6.자 대출금 95,000,000원, 다만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7. 4. 6.자 대출금은 망인 등이 일부 변제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에는 원금이 최초 대출금액인 95,000,000원보다 감소하였을 것으로 보인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17. 8. 12.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M 외 1필지 지상 건물을 V에게 보증금 100,000,000원에 임대하여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망인의 금전채무는 최대 355,000,000원(= 255,000,000원 + 100,000,000원)이 된다(한편 피고는 망인이 동생 N 명의를 빌려 금융기관으로부터 64,000,000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N 명의 채무를 망인의 채무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이후 위 대출금채무와 위 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D은 위와 같은 피고의 면책적 채무인수로 인하여 자신의 상속채무를 면제받아 최대 118,333,333원(= 355,000,000원× 3/9)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사해행위 해당

D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3/9 지분을 포기하였는데, 구체적 상속분이 최소 120,520,066원인 반면 재산분할로 얻은 이익은 최대 118,333,333원에 불과하여 과소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의 자녀로서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의 상속지분인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D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19. 12. 10. 접수 제323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기현, 판사 윤영수, 판사 서동인

별지